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4~ 1
----------	---------

제출일자	2004. 4.
제 출 자	거창군수

□ 개정이유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지방세법에 맞도록 조정하고,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함으로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함,
- 주민세 및 주행세 등 가산세를 취득세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각각 달리 적용함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3. 9. 25, 2003 16) ,
- 자동차를 승계하는 경우 자동차세 과세를 일할계산 신청하는 경우에만 양수 자와 양도자 간에 분할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현재 6 이하로 하며 서류의 송달방법을 등기우편 또는 직접교부로 한정하던 것을 1 30 원 미만인 정기분 고지서는 보통일반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함(17 4 항 신설)
- 나. 법인세할 주민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 , 담배소비세 등 가산세율을 조정함.(1 제22 , 41 4, 62 , 99).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분의 20
 - 신고불성실가산세(,) ⇒ 00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와 같이 1 10,000 3
- 다. 자동차를 승계하는 경우 그 이전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함.(39 1)
 - .005. 1. 1 부터 시행
- 라. 1,000 115 1,000 175 .(1 제41 3)
- 마.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
 - 주행세 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자료를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41 6).
 - 종합토지세 과표 결정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함.(74)

□ 개정근거

- 지방세법 (7013 2003.12.30)
- 지방세법시행령 (18194 2003.12.30)
- 지방세법시행규칙 (213 2003.12.3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 조 2항 “ 1 6 ” “ 10 ” !한다.

제17 조 4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1 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 30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납세고지서의 송부일자 및 납세자별 송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 조 제4항 “ () ” “ () ” 1 “ 17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 ” “ 17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 ”) “ , ” “ ” !고하고 납부 하여야 “ , 2 ” 17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 “ 3 ” !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 20 “ ” !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 , 1 2 , 동조제4 “ ” “ ” , “ 100 !의 20 ” “ !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 조 1 2 !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1. 1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 20 1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14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 14 제24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39 24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징수는 제155 5 1 전에 그 기본 1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 1 1
1. 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
 2. 동차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동차를 승계취득 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제39 1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 1 () 법 제196 6 14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양도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제40 34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196 7 1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 일을 기준으로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

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전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1 조 3 1항 중 “1,000 원 이상 115만 원 이하”를 “1,000 원 이상 175만 원 이하”로 한다.

제41 조 4의 제목중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을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을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이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41 조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 조 6 ()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말일까지 군수에게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61 조의 제목중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을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을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2 조 1항 중 “100 원 이상 10만 원 이하”를 “100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하고, “100 원 이상 10만 원 이하”를 “100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한다.

고불성실가산세를” , “ ” 1 4 :중
 “ ” “ :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 , “ ” “ !고한
 세액” , 1 5 “ ” “ ” .

다만, 4 5 :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
 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제
 121 1 2 :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4 :중 제5 6 .

⑤ 제2 4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
 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
 가 동법 제10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 과세표준액 적

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⑥ 제5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영에
 의하되, 5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9 1 2 : 중 “ ”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 , 3 .

③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 2 :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
 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97 98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
 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1 2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
 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 :의
 20 |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1 2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 :
 제1 2 :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 칙

①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9 2 · 39 1
및 제40 3 2005 1 1 , 74 5 ㅅ 및
제6 2006 1 1 .

②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신 · ㄴ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 8 () ① ()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 6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⑥ ()	제 8 () ① () ②위원장을 포함 하여 10 이하..... ③ ⑥ ()
제 17 () ① ③ () < >	제 17 () ① ③ () ④ 법 제51 2 1 ㄱ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 30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납세 고지서의 송부일자 및 납세자별 송부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2 조 ()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 178 ㄱ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 · ㄴ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 ()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일부터 각각 1) 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제 22 조 () ①법 제178 ㄱ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하 이 조에서 “ ”)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신 · ^L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의 10% 미만일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 ~ 4. () 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 20%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	 ②산출세액..... 1. ~ 4. () ③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 20%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신 · ㄴ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④ 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 20 ㄱ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 1 ㄱ 제2 ㄱ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산출세액.....산출세액 ..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 1 2 ㄱ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제 39 () ① () ② 군수는 제1 ㄱ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 ㄴ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 ㄱ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 39 () ① () ② ㄴ수는 제1 ㄱ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 ㄴ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1 ㄴ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ㄱ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ㄴ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ㄴ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신 · ㄴ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③ ④ () < > 제 40 (ㄴ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 ① ② ()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 ㄴ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ㄴ, 전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경우 3. ㄴ동차를 승계취득 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 ④ () 제39 1 【 ㄴ 】 법 제196 6 1 ㄴ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중에 매매· ㄴ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 40 (ㄴ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 ① ② () ③ 법 제196 7 ㄴ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 하여야 한다. 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ㄴ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

신 · ㄴ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④ () 제 41 3 ()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 115로 한다. ② () 제 41 4 () ①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7 1 4 ㄱ 및 동법 제8 ㉔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7 2 3 ㄱ 및 동법 제8 ㉔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 ㉔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 >	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 제 41 3 () ①1,000 175..... ② () 제 41 4 () ① 신고 및 납부..... 1. 신고 및 납부..... 2. 신고 및 납부..... ② ㉔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 ㄱ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196 17 ㉔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ㄱ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 · L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1)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 %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1)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u>< ></u>	제41조 6 ()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 61 조 ()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1 조 () ①신고하고 납부.....

신 · ㄹ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 ④ 제54 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 , 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 62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 1. ~ 3. ()	②신고하고 납부..... ③ () ④신고하고 납부..... 제 62 () ①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만, 4 5항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제121 1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 3. ()

신 · ㄴ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4. 61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61 조의 규정에 의한 시 · 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③ () 제 74 () ① ④ () < >	4. ……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신고한 세액…………… 5. ……………신고…………… ② ③ () 제 74 () ① ④ () ⑤ 12 4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가 동법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1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⑥ 15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영에 의하되, 5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 ㄴ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 99 () ①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 일까지 군수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 1 7 31 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	제 99 () ①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 ②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 ③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 ㄱ 및 제2 ㄱ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97 ㄴ 및 제98 ㄴ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1 2 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 ㄴ의 20 ㄴ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1 2 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 ㄴ 제1 2 ㄴ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